

## 5.1.22 드론교육원 운영규정<개정 2020.10.23.>

제정 2017. 11. 02.

개정 2020. 10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드론(무인항공기)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된 드론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으로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10.23.>

제2조(위치) 교육원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두며, 비행실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교내 운동장 및 교외 비행장에 두고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3.>

제3조(조직) ①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, 원장은 드론 전문지식을 갖춘 부교수 이상 또는 드론 실기평가관 자격을 갖춘 자로 보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10.23.>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<개정 2020.10.23.>

③ 교육원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교관이나 직원을 둘 수 있다.<개정 2020.10.23.>

④ 교육원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0.10.23.>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0.10.23.>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<개정 2020.10.23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교육기간) 교육원의 교육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육생 모집은 정기적으로 하며, 홈페이지(sanhak.cdu.ac.kr)를 통해 공고한다.<개정 2020.10.23.>

제6조(지원자격)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3.>

제7조(선발방법)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 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3.>

제8조(교육과정) ① 교육원에 드론조종과정, 교관과정, 드론정비과정 그 밖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3.>

②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개설하고,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20.10.23.>

제9조(교육비) ①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0.23.>

② 교육비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교육원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상이하되, 총 이수시간의 80/100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되, 다만,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20.10.23.>

제11조(교육생 활동의 금지) 교육생은 교육기간 동안 안전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,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12조(재정) 교육원의 재정은 교육비, 보조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20.10.23.>

제13조(예산편성 및 집행) 교육원의 세입금은 전액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고, 예산 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를 준용한다.<개정 2020.10.23.>

제14조(운영세칙)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23.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# 수료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드론교육원에서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과 정 명 :

이수기간 : . . . ~ . . . ( 시간)

년 월 일

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 
드론교육원장 ○ ○ ○